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제출년월일 : 2007. 10. 29

의안번호	255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I. 제안이유

- 하수처리구역내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 및 침하 등으로 지하수와 방류하천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지하수 등 불명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목표(금강합류점 BOD 5.9mg/ℓ) 달성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8,75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이 국비보조금을 30% 지원하고 있어 '06년 사업으로 서구 월평, 유성 봉명, 대덕구 회덕 및 오정천 주변지역과 계곡수 유입지점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동일한 방식으로 '08년에 동구 및 중구지역 5개 하수분구에 대한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 7. 30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가 대상지역으로 통보되었기
-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70%)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것임.

II.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원)	사업대상지역
계			106,300	
설계비		1식	2,360	○ 동 구 - 대전천 우안 : 106ha, 5.9km - 대동천 하류 : 305ha, 19.9km - 가양청 상류 : 730ha, 30.1km
감리비		1식	1,306	
기타부대비		1식	2,373	
공사비	소 계	122.0	100,261	
	신설 (km)	58.8	30,695	○ 중 구 - 대전천 좌안 : 609ha, 10.5km - 유등천 우안 : 1,200ha, 55.6km
	교체 (km)	63.2	51,204	
	배수설비(개소)	8,930	18,362	

III. 의무부담내용

1. 의무부담액 : 206,6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가. 사업비는 106,300백만원, 부가세 제외, 추정금액으로 실시계획 확정시 변동 예정

나. 의무부담액은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 붙임 참조)

- 시설임대료 : 185,354백만원, 20년 균등 상환

- 운영비 : 21,246백만원(20년간 운영), 사업지역 전체 관리

2. 선 부담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3. 의무부담자 : 주무관청(대전광역시)

4.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에 플러스 수익률

5.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의무부담액	국비(30%)	지방비(70%)
	206,600	61,980	144,620

※ 의무부담 사업비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될 수 있음

IV.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IV. 첨부서류

-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 1부
- 관련법규 사본 1부

□ 정부지급금 산정 · 지급 방법

1. 정부지급금의 산정

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text{○ 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a 추가
- 임대 기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
 - 표준 비용 산정 : 시설완공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금액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분기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

2.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3년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 AA-)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지급주체 : 주무관청(대전광역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